



건설업 인사노무 실무 ②

자료제공 : 노무법인 **디앤** 김광태 노무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노무 자문위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 실무'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1. 건설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무 - 이번호
2. 특이형태 근로자 고용관리
3. 건설 사회보험 관리
4. 노동부 지원금 제도
5. 건설 산업안전 관리

1. 건설근로자의 퇴직관리,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Q&A |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원칙 복직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최대 2천 만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 연 2회, 2년까지 반복 부과 가능). 실제 부당하고 구제판정 불이행 사례 2회 불응으로 2,800만원이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판결 (2013헌바171, 2014. 5. 29.)

■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설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1항).

일용근로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통산하는 요건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통산 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1호에 의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①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②근로의 대체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또는 금액(국가공사 3억원, 민간공사 100억원)이상의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발주자에게는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를 의무화 하고 있고, 준공 시정산하여야 한다(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동 시행령 제6조).

■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적용대상 아닌 경우에는 공제회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 가능

구분	적용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200호 이상인 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실 이상인 공사
일반 민간건설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가입대상 근로자**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 자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 고용된 임시,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공제제도 운영**

- 당연가입대상공사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건고법 제10조의 4 제1항). 단, 임의가입대상공사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수시로 가입가능
- 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파악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고,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EDI로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일수 산정기준 (건고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함.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도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작성
 * 공제부금 계산방법 : 매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누계 x 4,200원(2012년 4월 1일 이후 착공공사의 경우)

■ **퇴직공제금 청구**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 넘는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건고법 제14조 제1항) “퇴직”은 구체적으로 피공제자가 몸담았던 건설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과 함께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증명서류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실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영업하고 있는 사진 및 영업업증, 영업장소, 인근상점의 연락처가 기재된 사유서와 물품구입 영수증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증명서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작성의 고용증명서, 재직증명서 - 사업체명과 급여개시일이 표시된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상용근로자(정규직)가 된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고용증명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증명서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학업, 취업준비, 군입대, 전업주부, 외국인취업 만료 등)	- 재학증명서(복학증명서), 학원 수강증 등 - 입영통지서 등 - 주민등록증본, 청첩장, 항공권 등 귀국 입증서류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시 반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단, 자진신고 시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을 반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사업주의 거짓보거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됨(건고법 제16조, 제24조)

■ 부정수급 신고 포상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단, 상한액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건고법 제 16조의 2).

■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금 상계가능 여부?

법이 시행된 1998. 1. 1.부터 2003. 6. 30.까지는 상

계가 가능했었지만, 2002. 12. 30 법개정을 통해 제 17조 공제조항을 삭제하여 2003. 7. 1.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게 되었다.

※ 제17조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삭제(2003. 7. 1. 부터 시행)

Q&A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하고 난 이후 퇴직금 지급은 이중지급인지?

【질의】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 만약, 귀하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38, 회신일자 2009. 12.24.).



9. 일용근로자 고용관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오해

- ‘일용(日傭) 근로’는 한자 뜻대로 풀이를 하자면 하루만 근무를 하기로 한 고용관계를 뜻한다.
- 실제 근무형태는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수년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이 되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해 관련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개념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적절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하다.

■ 일용근로자의 개념이나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명시 법령

- ① 근로기준법 : 정의규정 없음
- ② 고용보험법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③ 산재보험법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 ④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1호)
- ⑤ 대법원 판례 :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대판 1987.4.14, 87도153)
- ⑥ 행정해석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

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 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근기 1451-12200 1983.5.12.)

■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 개념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 절차가 간소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대체로 세액도 적음. 그러므로 당사자 간에 ‘일용’으로 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모두 일용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자로 인정해 주되, 같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1년까지 일용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 소득세 징수방법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의 소득세 공제에 사용하는 간이 세액표를 사용하지 않고 1일의 일용근로소득에서 100,000원을 소득공제한 금액의 6% 세액을 정하고 다시 55%를 세액 공제한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 연말정산도 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1일 기준소득세액 = (일용근로소득 - 100,000원) × 6% × (1-0.55)

단, 이와 같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는 일반 급여자로 보아 간이 세액표대로 원천공제하고 그 해 전체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행하여야 한다. ☺